

과수산업육성대책(안)

2004. 3.

이 대책은 향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
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.

농 립 부

“당신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”

- 차 례 -

I. 과수산업의 여건 및 발전목표	1
II. 과수산업 육성대책(안)	6
1. 기본방향	6
2. 세부 추진계획(안)	8
가. 지방 자율계획 추진사업	8
나. 중앙 추진사업	20
다. 기존 지원사업의 내실화	24
3. FTA기금 사업별 투융자계획	26
III. 향후 조치계획	28

I. 과수산업의 여건 및 발전목표

현황 및 여건

<생 산>

- ☐ 재배면적은 '99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이나, 과잉기조가 지속
 - 재배면적 : ('90) 133천ha → ('99) 174 → ('02) 166
 - 생 산 량 : ('90) 1,766천톤 → ('99) 2,385 → ('02) 2,500
- ☐ 과종별로 주산지가 특화되지 못하고, 주산지도 과원이 집단화되지 못하고 산재
 - 주산지 시·군 : 사과 16개시·군(74% 점유), 배 11, 복숭아 7(47%)
※ 주산지 기준 : 500ha(생산량 1만톤 이상)
- ☐ 상대적 고소득 작목으로 인식되어 과수농가는 증가하였으나, 경영규모영세, 고령화 등으로 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력향상에 한계
 - 농가인구 : ('92) 571만명 → ('02) 359(△37.1%)
 - 과수농가 : ('92) 227천호 → ('02) 247(+11.8%)
 - 호당 평균 0.7ha(1ha이하 82%, 0.5ha이하 51%)
 - 50세 이상 농가 68%, 60세 이상 45%

<유 통>

- ☐ 산지유통시설은 상당부분 확충되었으나 질적 개선은 미흡
 - 규격·공동출하 진척 : 표준규격출하(33.2% → 86.4)
 - 생산·유통계열화 미흡 : APC 이용율 9.1%
 - 품목전문농협, 지역농협, 영농조합법인 등이 산지유통에 참여하고 있으나 유통 전문조직으로서의 역할이 미약

□ 소비패턴이 고품질·안전성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

- 품질에 따른 가격 양극화로 소득 격차 심화 : 사과 10.5배, 배 15
- 대형 소비처,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유통형태가 확산
- 신선 과채류 및 수입과실과의 소비 대체로 과실소비 정체
 - 1인당 소비량 : ('90) 41.8kg → ('99) 58.4 → ('02) 58.8

<수출입>

□ 수출은 주 시장인 대만의 WTO 가입('02)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, 값싼 중국산 등으로 인한 동남아시아 잠식으로 확대에 한계

- 신선과실 수출량 : ('90) 13천톤 → ('99) 16.3 → ('02) 38.5

□ 수입은 식물검역상 제한에도 불구하고, 바나나·파인애플 위주에서 '9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온대과실 수입으로 급격히 증가

- 신선과실 수입량 : ('90) 37천톤 → ('99) 248 → ('02) 345

<대외여건>

□ 한·칠레 FTA 발효('04.4.1), DDA협상진행 등 시장개방확대 불가피

- 현행관세(45%수준)하에서도 가격경쟁력은 주 경쟁국보다 낮음
 - 노지포도 : 중국의 1.3배(시설포도 : 칠레의 2.3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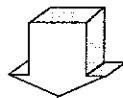
□ 장기적으로 식물검역 제한이 해제될 경우 수입급증 예상

- 특히, 저가의 중국산 수입이 허용될 경우 국내과수산업은 크게 위축 전망
 - KREI추정(2010년) : 재배면적 7.93~8.45% 감소, 생산액 26.3~31.1 감소

한·칠레 FTA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향후 7년간 ('04~'10) FTA기금 1조2천억원을 조성 지원

향후과제(SWOT분석)

		강 점(S)	약 점(W)
		○ 선도농 중심의 고품질 생산기술 확산 ○ 산지유통시설 상당 확충	○ 영세농·고령농이 많아 경쟁력 취약 ○ 과잉생산기조 유지
기 회 (O)	○ 고품질 안전농산물 수요 증대 ○ 과수분야 투융자재원 확보(FTA기금)	○ 고품질생산·유통체계 정착 ○ 소비자 기호를 고려한 기술개발·보급	○ 경쟁력 갖춘 농가중심으로 규모화 ○ 생산자조직의 활성화
위 험 (T)	○ 한·칠레 FTA, DDA협상 등 수입개방 확대	○ 국산과실 품질·안전성 홍보 강화	○ 적정생산체제 유지를 위한 구조조정



정책방향

◆ 개방화시대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규모화된 농가를 중심으로 조직화하고 고품질생산기반확충, 기업형 유통체계 확립을 통한 고품질과실의 생산·유통을 실현

⇒ 품목별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고품질생산·유통체계 정착

◆ 과수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산업의 구조조정

⇒ 탈농 농가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원

과수산업비전(2010년) 및 목표

< 목 표 >

- ◆ 생산 : 경쟁가능 농가중심의 고품질·안전생산체계 구축
- ◆ 유통 : 공동마케팅을 육성하여 50%를 브랜드상품으로 유통
- ◆ 수출 : 수출국 주류시장을 대상으로 고품질과실계약 수출체제로 전환
- ◆ 수급 : 전국단위 품목조직의 자율수급조절체계 정착

☐ 고품질 생산·유통을 뒷받침 할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

- 품질로써 경쟁 가능하도록 품목별 핵심 고품질 생산시설을 확충
 - 포도비가림시설 면적 : ('02) 40% → ('10) 70%
 - 키낮은사과원 면적 : ('02) 12% → ('10) 50%
 - 복숭아·단감 등 관수시설 : ('02) 22% → ('10) 60% 등
 - ⇒ 최상품 생산비율 : ('02) 30% → ('10) 60%
- 품질보증우량규격묘의 생산·유통체계 정착(20개소 설치)
 - 생산기반조성, 우량모수확보, 병해충검증 등 우량규격묘 생산기반 확충
- 고품질 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체계 구축
 - 기술정보 등 다양한 관련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
 - 품목별 기술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애로를 해소할 기술개발 및 지원체계 상시운영

☐ 산지유통조직 중심의 생산·유통체계 정착

- 규모화·전문화·시설화된 산지유통조직이 소비지 유통기구와 대등한 마케팅을 하는 체제구축
- 전국의 권역별 산지유통시설 배치계획에 따라 거점유통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
 - 공동마케팅 등 유통조직화를 통하여 현대화된 생산·저장·가공·유통 실현을 지원

□ 고품질과실의 **안정적** 수출체계 정착

- 전문생산(수출) 단지의 **생산·출하 기반을 정비**(50개소, 2,500ha)
- 해외홍보 강화 등을 통한 수출국 주류시장 개척
- 장기계약에 의한 안정적 수출물량 및 수출선 확보

□ 생산자조직 중심의 **자율** 수급조절체계 정착

- 생산·유통을 주도할 전국단위 품목조직 등 광역품목조직 육성
 - 전문농협육성, 지역제한 철폐, 품목연합회 활성화 등 제도개선 추진
- 생산자조직 자율의 **유통협약·명령제**를 적극 지원
- **유통활성화 자금**은 광역품목조직에 집중지원
 - 계약출하물량 : ('03) 130천톤 → ('10) 750

□ 재해, 수입급증 등에 따른 **경영불안**을 해소할 안전장치 확보

- 대상재해 확대, 지원을 인상 등 재해보험 확대
- 수입급증에 따른 가격하락에 대비 **개방적응소득보전직불제** 도입

□ 개방화에 대비한 **과수산업구조 개편**

- 은퇴가 불가피한 고령농의 탈농과 연계하여 **적정 생산면적 유지**
 - 재배면적 : ('02) 166천ha → ('10) 150 (△10%)
 - 생 산 량 : ('02) 2,500천톤 → ('10) 2,300 (△8%)
 - 농 가 수 : ('02) 247천호 → ('10) 200 (△19%)
 - 호당면적 : ('02) 0.67ha → ('10) 0.75 (+12%)
- 최적의 영농규모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**선도농이 생산 주도**
 - 1.5ha이상 : ('02) 18천호 → ('10) 22천호(총생산량의 50%이상 담당)
 - 은퇴농의 과원은 과원규모화 사업과 연계하여 경영이양
- 신규과원 조성에 대한 지원은 배제

II. 과수산업 육성대책(안)

1. 기본방향

지원원칙

- 과수산업이 한·칠레 FTA뿐만 아니라 향후 DDA 개방체제에서도 지속 가능하도록 향후 7년간('04~'10) 경쟁력 제고를 중점추진
 - 품질로써 외국산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고품질 생산 및 차별화된 유통체계 정착에 필요한 사업을 집중지원
 - 신규과원 조성, 개별농가단위 투입재 구입, 개별유통시설 설치 등 구조개선 효과가 없는 지원은 배제
 -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선도농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품목별 생산·유통조직에 중점 지원
 - 농가단위의 고품질생산시설 지원도 품목조직의 생산·유통 종합계획에 따라 조직참여 농가에 지원
- 지자체의 자율적 계획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
 -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자체의 품목별 자율사업 계획을 심사하여 우수지역 또는 품목조직 단위로 일괄지원
- 개방으로 직접피해를 받는 농가에 대하여는 경영안정 지원
 - 칠레산 수입으로 국산가격 하락시 일정부분 보전지원
 - 관세 감축품목 재배농가가 희망할 경우 폐업지원

추진방식

- 사업효율성 제고 및 지방농정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율계획사업과 중앙추진사업으로 구분
- 지역특성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지자체 자율계획사업으로 추진
 - 농림부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방향 및 지원기준을 제시
 - 지자체는 고품질과실 생산·유통 종합사업계획을 자율수립
 - (중전) 개별사업별·개별경영체별 지원계획 수립
 - ⇒ (개선) 품목별 조직단위로 종합사업계획 수립
 - 시·도별로 주요 종합사업계획 단위별 산·학·연·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고 자문 및 검증 실시
 - 필요시 시·군에도 협의체를 두어 활용
 - 농림부는 지자체 사업계획을 심사 후 지원규모 확정
 -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사업타당성, 사업추진 능력 등을 심사
 - 우수지역(품목별조직)의 사업계획 단위로 예산 일괄지원
 -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환류 실시
 - 사업내용개선 및 지자체에 대한 재원배분 차등
- 전국단위로 동일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주관
 - 대상사업 : 폐업지원, 개방화적응소득보전직불, 과원규모화, 연구개발 및 홍보사업

2. 세부 추진계획(안)

가. 지방 자율계획 추진사업

< 추진방향 >

=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지자체 자율방식으로 추진 =

- ◆ 고품질 안전생산·유통체계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
- ◆ 「선택과 집중」 원칙에 따라 우수경영체에 집중 지원
- ◆ 지역단위 또는 품목조직 단위로 일괄 지원
- ◆ 엄격한 평가체계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효과성 제고

(1)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주체 : 시·도 및 시·군

○ 시장·군수 : 자체계획의 수립·시행

- 시·도 계획 또는 전국계획 중 관할구역내 사업의 시행

○ 시·도지사 : 2개 시·군이상 광역계획의 수립·시행

- 전국계획 중 관할구역내 사업의 시행
- 시·군 사업계획의 심사·조정·관리

○ 전국단위 사업계획은 전국단위 사업주체의 계획을 농림부심사

- 시·도(또는 시·군)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시·도(또는 시·군)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수용
- 시·도(또는 시·군)의 사업계획 참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조직에 직접지원

(2) 지자체의 과수산업발전계획 수립

○ 과수산업육성대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자율적인 발전계획을 세워 계획적 추진

- 계획수립주체 : 시·군, 시·도
- 계획기간 : '04~'10(7년간)

○ 계획수립 방향

- 지역특성에 맞고 발전가능 한 품목의 선정
- 지역단위 또는 품목조직 단위로 발전목표를 설정
- 목표달성에 필요한 생산·유통·가공·수출사업 등이 연계 추진 되도록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
- 개별사업별 분산지원을 지양하고, 지역특성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생산·유통의 계열화 주체가 있는 품목별조직 단위로 지원대책 마련

< 품목별 조직의 범위 >

- ① 품목 전문조합
- ② 지역농협
- ③ 지역농협 연합사업단
- ④ 영농조합법인
- ⑤ 산지유통센터(APC), 산지전문출하조직

※ 당해 품목의 관할 재배면적이 100ha 이상일 것

- 기준에 맞는 품목별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

- ① 연합사업단을 구성하여 기준에 맞추거나
- ② 필요시 기준에 맞는 품목별 조직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그 조직을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 수립

○ 세부작성요령 : 별첨 참조

○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기준

- 지원대상 예시사업 및 사업별 지원기준 : 붙임

- 기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자체 자체개발사업도 지원가능

※ 지자체 자체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재원별 부담비율은 지원 대상자,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예시사업의 부담비율을 준용

- 과수산업의 구조개선 방향과 일치하지 않은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— < 지원대상 제외 > —

①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신규과원조성

② 개별농가단위 유통시설설치

③ 직접 투입재(비료·농약·농기계, 소모성자재 등)구입 지원

④ 기타 부지매입비·음식점·숙박시설 설치비 및 임대비·행사성
·경상적 경비 등

○ 시·도별 과수분야 산·학·연·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·운영

- 사업계획 수립, 사업대상자의 적격여부, 재원배분, 경영·기술지도, 현장애로 해결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자문역할 수행

- 협의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지원계획

○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

- 품목별조직의 사업여건 분석 및 발전목표 설정

-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 및 사업량

- 사업별 단가 산정기준 및 총 사업비, 재원별 분담액

- 시행사업에 대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내역 및 컨설팅 계획

(3) 사업계획 심사·확정

- 심사주체 : 농림부
 -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
 - 개별사업 담당부서도 참여하여 지자체 사업계획의 중복여부 심사
- 사업의 목표, 추진방향, 타당성, 적정성 등 심사
- 일정점수(예 : 60점) 이상 사업계획 단위를 지원대상으로 결정
 - 지원대상중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단위별로 일괄지원
- 사업목적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 조정

— < 시·도 사업계획 심사기준 > —

- 시·도별 사업계획의 적정성
 -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의 적정여부(과잉생산 방지, 구조개선 효과여부 등)
 - 생산·유통의 연계성(공동출하 비율, 산지유통시설 활용도 등)
 - 산·학·연·관 전문가 협의체 운영계획(계획수립, 자문활동 등)
 - 시·도(시·군) 및 품목별 조직의 사업추진 능력
 -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(지방비 확보, Cluster구성, 사업간 연계성, 중장기 계획)
 - 사업여건 확보여부(재배면적, 보유시설, 기술능력, 판매·수출실적, 부지확보 등)
 - 전년도 사업실적 및 지자체 개발사업 평가
 - 계획 대비 추진실적(사업비 집행, 사업계획 이행도 등)
 - 사업성과분석 결과(2004년도 사업심사시는 제외)
 - 수출, 틈새, 신규 아이디어 사업 등 지자체 개발사업계획
- ⇒ 세부 심사기준은 전문가 협의를 통해 확정(별도시달)

(4) 지원대상자 선정

○ 선정주체 :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

< 선정기준 >

- 발전계획을 세운 품목별 조직의 구성원
- APC, 전문출하조직의 경우는 출하협약 체결자
- 지원대상 사업지침(붙임)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자
- 발전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
- 농업종합자금지원시스템에 의해 지원 가능한 농가
- 심사결과 탈락한 농가에 행정기관의 재심사 의견제출 기회 부여

○ 선정절차

- 지자체는 품목별 조직단위 생산·유통 종합계획 실행주체(지역 대표 또는 품목조직)와 협의하여 계획 수립
- 신청 또는 공모를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 개별농가를 선정하여 계획에 반영
- 사업계획 심사·확정시 선정된 경영체를 지원 대상자로 확정
 - * 종합계획 확정이후 선정기준 적합 여부에 따라 대상자 추가 또는 제외 가능

◆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시·도(시·군)에 심사위원회를 두어 재심요청이 가능하도록 체제 구축

- 사업성취가능성, 신용도, 기술,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재심사후 대출기관에 통보

※ 심사위원회 : 행정·지도기관·관련단체, 독농가 등으로 구성 또는 Cluster 활용

○ 자체평가 및 사후관리

- 전문가 협의체에서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여 자문실시
- 대출농가를 대상으로 대출기관에서 경영컨설팅 실시
-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확인시 환수 조치
- 사업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연차별 추가 지원여부 판단

○ 심사·평가 등 세부기준 및 절차는 향후 우리부의 투융자집행·평가체계가 확정되면 그 방침에 따라 시행

(5) 사업성과에 대한 중앙평가 실시

- 성과평가 주체 : 농림부
 - 필요시 민간전문기관에 사업성과분석 용역 의뢰
-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방향 개선, 지자체별 예산 차등배분
 - 사업부진 조직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중단
- 평가결과를 외부 공개하는 등 홍보 추진

(6) 2004년도 사업추진 일정계획

- 과수산업육성대책(안)에 대한 지역순회설명회 개최(3하~4초)
 - 대상 : 시·도, 시·군 공무원, 농업인, 품목단체, 지역대학교수 등
 - FTA 내용, 지원대책 설명, 사업시행지침(안) 보완·개선 등 의견수렴
- 시·도별 자율사업계획수립(4.상)
 - ※ 3.3일 시·도 담당과장 회의시 자율계획 수립토록 기 협의
- 시·도별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(안) 작성(4.중)
-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시·도별 사업계획 확정·시행(5.초)
 - FTA 지원위원회 심의, 국무회의 상정

지원대상 예시사업 및 사업별 지원기준

1]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

☐ 외국산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고품질 생산시설을 설치

- 고품질생산, 구조개선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원하되, 신규 과원조성 등 구조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지원배제

☐ 지원대상

- 경영능력과 기술을 보유하여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종합자금지원시스템에 의해 적합한 농업인으로서, 지역(품목조직)단위 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자

☐ 사업개요

- 지원사업 : 고품질생산, 생산비절감, 재해예방, 에너지절감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시설·장비(시설포도·시설 과채류의 시설 개보수 포함)

※ 예시사업 : 우량품종갱신, 비가림시설, 관수시설, 방풍시설, 키낮은 사과원, 지주시설, 시설포도·시설과채류의 시설개보수 등

- 재원별 부담비율 : 보조50%(국고25, 지방비 25), 융자 30, 자담 20

- 융자조건 : 연리 3%, 5년거치 5년 균분상환
- 지방비는 총사업비의 25%이상 지원가능

② 과수 생산기반정비

□ 용수공급, 배수로 및 경작로 등 과수생산과 출하기반을
조기 구축하여 안정영농 및 생산성 향상

○ '08년까지 30ha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대해 기반정비 추진

○ 수출단지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위한 경쟁력 있는
과수생산 거점으로 육성

□ 지원대상 : 과수주산지중 집단화된 50개지구

○ 전문생산(수출)단지를 우선 추진하여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확충

□ 사업개요

○ 매년 10개지구씩 500ha 생산기반정비 추진(5개년간) : 총 2,500ha

- 1차년도 : 사업지구 선정, 공사발주 및 계약, 공사시행

- 2차년도 : 공사완료

○ 지원단가 : 25,410천원/ha(개발유형에 따라 단가 차등)

○ 재원별 부담비율 : 보조 100%(국고 80, 지방비 20)

○ 개소당 규모 : 평균 50ha(최소 30ha이상)

○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된 지역부터 단계별로 추진

- 1단계 : 과실전문생산(수출)단지(현재 49개단지 지정)

- 2단계 : 30ha이상 과실 주산단지

③ 과수전용 농기계임대

☐ 대형·고가인 과수용 농기계의 임대지원을 통해 농가들의 구입비 부담경감, 농기계 이용을 제고 및 생산비 절감을 도모

☐ 지원대상 : 시·군, 주산지 농협, 영농조합법인 등

☐ 사업개요

○ 지원내용

- 대상기계 : 잔가지파쇄기, 제초기, 과수인공교배기, 트랙터, 퇴비살포기, 스피드스프레이어 등 구입가격이 3백만원 이상이고, 내구성이 있는 과실생산관련 농기계

- 부속시설 설치 : 농기계보관창고 및 간이수리시설 등

○ 지원단가 : 500백만원/개소

○ 재원별 부담비율 : 국고보조 50%, 자부담 50

- 자부담은 지방비로 지원가능

○ 지원규모 : 60개소

☐ 농기계임대사업 지원대상자가 구입하려는 농기계를 일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

○ 사업대상자는 구입농기계를 농업인·농업법인 등에게 유상임대 실시

○ 내구년한 경과후 임대수입 적립금을 활용하여 대체 농기계를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사업의 계속성 유지

4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시설 설치

□ 기존유통시설을 계열화하고, 전처리시설·첨단 상품차별화 시설을 집중 지원하여 품질경쟁력 강화 중점지원

□ 지원대상 : 전국단위 품목별 생산자조직 등 생산자단체, 지자체

- 전국단위 품목조직이 수급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수립한 산지유통센터배치계획에 따라 지원
- 기존 산지유통시설에 대하여도 전국단위 품목조직 중심의 유통계열화에 참여할 경우 이에 필요한 시설설치·개보수 지원

□ 사업개요

○ 재원별 부담비율

- 공공유형 : 국고보조 60%, 지방비 40
- 일반유형 : 국고보조 35%, 지방비 25(증액가능), 자부담 40

※ 공공유형은 완공후 공공소유를 전제로 지원

○ 지원내용 : 전산처리시설, 비파괴 당도선별기, 형상선별기, 예냉시설 등 수확후 관리에 필요한 시설

○ 운영방안

- 다수의 생산자가 참여한 광역 산지 전문유통조직
- 과수를 주품목으로 하면서 연중 가동이 가능한 품목을 확보
- 기존의 산지유통센터를 계열화하여 규모 있는 출하가 가능한 조직이 담당

○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의 시행요령을 준용

- 동 사업요령에 의해 '04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조직은 이 대책에 의한 사업대상자로 봄

5] 우량묘목생산 지원

☐ 품질 보증묘가 생산·유통될 수 있도록 묘목 생산·검증·공급 체계 구축을 지원

☐ 지원대상 : 종자산업법에 관련규정에 의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춘 조직

○ 묘목·생산 공급계획,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

☐ 사업개요

○ 지원내용

- 묘포장조성, 우량모수확보, 병해충검정장비 확보등 우량묘목생산 기반조성을 지원

○ 사업량 : 20개소(개소당 연간 과원 100ha를 갱신할 수 있는 규모)

- 묘포장 규모 : 사과 10ha(연 20만주 생산), 포도 4ha(10만주)

○ 재원별 부담비율 : 보조 60%(국고 30, 지방비 30), 국고융자 20, 자담 20

- 융자조건 : 연리 3%, 5년거치 5년 균분상환

○ 사후관리

- 사업실시자는 생산묘목에 대해 종자산업법에 의한 규격묘의 품질 보증을 실시

- 「우량묘목공급위원회」를 구성하여 공급가격, 하자발생시 보상 수준 등 결정

⑥ 과실류 가공업체의 시설현대화 등 지원

☐ 국산과실 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생산비절감이 가능하도록
가공시설 개·보수 등을 지원

☐ 지원대상 : 국산과실을 이용하여 주류, 주스, 잼 등 가공식품을
생산하는 시설

☐ 사업개요

○ 지원내용

- 공장증설, 시설개보수, 시설현대화·자동화, 저장 및 오·폐수처리시설,
기타 생산제품의 품질향상 및 비용절감시설·장비의 설치·구입을 지원

○ 재원별 부담비율 : 보조 50%(국고 25, 지방비 25), 융자 30, 자담 20

- 융자조건 : 연리 3%, 5년거치 5년 균분상환

○ 사업량 : 140개소

○ 지원단가(한도) : 개소당 5억원

나. 중앙 추진사업

1) 과원규모화 사업

- ☐ 과원규모를 확대하는 농가에 과원매매·장기임대차를 지원
 - 사과·배 등 과수 전문야를 대상으로 실시

- ☐ 지원대상 : 비농가, 전업·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
또는 비농업법인 소유의 농지를 매입(장기임차)
하여, 과원규모를 확대하려는 60세이하 과수농가

☐ 사업개요

- 사업시행기관 : 농업기반공사
- 지원대상농지 : 과수원(실제이용현황 기준)
- 지원단가 : 매매 105백만원/ha, 임대차 20백만원/ha(융자 100%)
 - 매매사업 지원상한 : 40,000원/평(전국 과수원 평균가격 기준)
- ※ 지원상한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

○ 지원상한 및 지원조건

구 분	지원상한	지 원 조 건	
		융자금리	상환기간 및 방법
○ 과원매매	5ha	연리 3.0%	연령에 따라 10~30년 원금 균분상환·거치식상환·체증식 상환
○ 과원임대차	5ha	무이자	5~10년 원금 균분상환

- 지원규모 : 3천ha(매매 1.5천ha, 임대차 1.5천ha)

[2] 개방적응 소득보전직불사업

☐ 칠레산 과일수입이 증가하여 국산 과일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시, 경영안정을 위해 차액의 일정부분을 보전

☐ 사업시행방안

- 대상품목선정 : 시설포도, 참다래, 복숭아 등 관세감축대상 품목
- 지원요건 : 칠레산 수입량 증가로 국산과실 가격이 하락한 경우
- 국내소비(생산) 대비 수입량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
- 기준가격 : 대상품목의 가락동 도매시장가격(최성출하기 일정 기간(2개월간)의 가중 평균 가격)
- 지원기준 : 평년가격의 80%이하로 하락시 가격차의 80%를 보전
 - 지원대상농가 : 지원요건 발생 당시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가
 - 지원단가 : (평년가격 × 0.8-당해연도 평균가격) × 0.8
 - * 평년가격 : 최근 5개년간 평균가격 중 최고·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
 - 농가별 지원금액 : 재배면적×평균생산량×지원단가×조정계수
 - * 조정계수는 품목별 지원총액이 WTO의 최소허용보조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하여 적용
- 실시기간 : 2004~2010년(7년간)

☐ 추진계획

- FTA이행지원위원회에서 지원기준 등 세부지원내용 심의·확정
- 대상품목의 수입량, 국산가격 등 발동요건 모니터링체제 구축·운영
- 발동요건 충족시 지원단가 산정 및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신청을 받아 지원실시

③ 폐업 희망농가에 폐업보상금 지원

☐ 농가가 신청할 경우, 폐업여부를 확인하고 보조지원

☐ 시행방안

○ 대상농가 : 폐원, 매도(매입으로 전업농이 될 수 있는 농가에게 매도)하는 과원의 과수목 소유자

○ 대상품목

- 폐원 : 시설포도, 키위, 복숭아 등 관세감축대상 품목

※ FTA지원특별법 관련규정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이후 신규 조성한 과원 및 매입한 과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- 매도 : 전과종(과원규모화 사업과 연계추진)

○ 지원기준(안)

- 폐원 : 3년간 순소득(예시 : 10a당 4백만원, 시설포도는 1천만원)

- 매도 : 1년 순소득(예시 : 10a당 140만원, 기타과종은 70만원)

○ 실시기간 : 2004~2008(5년간)

○ 지원관리

- 생산시설현대화 사업비를 지원 받은 과원은 폐원지원 배제

- 폐원지원을 받은 농가가 사후관리기간(5년)중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할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조치

☐ 추진계획

○ FTA이행지원위원회에서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 심의·확정

○ 대상품목·지원기준 등에 대한 고시 및 대상품목 재배농가 현황파악 실시

○ 농가신청시 과수목 굴취 또는 매매여부 확인후 보상금 지원

4] 조사·연구·홍보사업

- 과종별 육종·재배·수확후관리 등 현장애로기술개발 지원 및 개발한 기술을 농업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과종별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축 지원 등

- 지원대상 : 전국단위 품목별생산자조직
- 기술분야별 전문가로 품목별 기술협의회 구성하고 포털사이트운영
 - 기술정보 등 다양한 관련정보서비스 체계화 지원
 - 기술상담, 애로사항 해결 등 질의·응답 및 토론의 장 마련
 - 발굴된 현장애로를 해소할 기술개발 용역사업 추진

- 국산과실 소비촉진 및 수출증대를 위한 홍보지원

- 홍보방향
 - 고품질안전농산물생산, 상품성제고, 조직화 등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관한 대 농업인 홍보
 - 국산과실의 우수성, 과실소비문화확산, 과실 섭취기준 설정 등 국내 소비확대 방안에 관한 대 소비자 홍보
 - 수출대상국 주류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홍보 등
- 지원대상 : 전국단위 품목별생산자조직, 농협중앙회, 유통공사 등
- 매년 홍보계획을 응모받아 과실 홍보위원회에서 선정·지원
 - * 홍보위원회 : 농림부, 농진청, 농협, 유통공사,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

다. 기존 지원사업의 내실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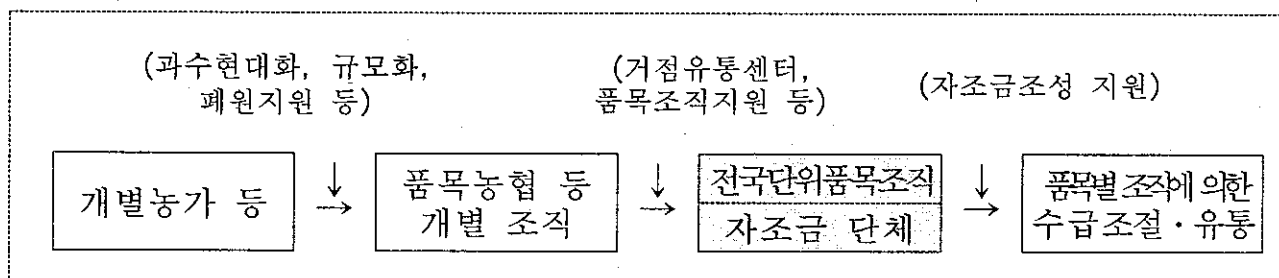
< 추진 방향 >

- ☐ 생산자 조직의 유통환경 변화 대응력제고를 위한 자조금 지원
- ☐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도 대상재해를 확대하고 지원도 확대
- ☐ 품목조직이 중심이 되어 생산·유통을 주도하도록 지원 확대

☐ 자조금 조성 지원으로 유통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

- 전국단위 품목조직을 육성하고 자조금을 지원하여, 조직 중심으로 수입산 과실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
 - 농가, 작목반, 법인 등 상호간에 납품경쟁을 지양하고, 공동으로 소비지 유통에 대응하며 소비확대를 추진
- 조성품목 : 사과, 배, 포도, 감귤, 단감, 복숭아
- 자조금 조성주체
 - 사과·배(과수조합연합회), 감귤(감귤협의회), 시설포도(한국포도회) 등
- 조성규모 : 244억원(생산자단체가 조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)

※ 생산자 조직 중심의 지원체계



□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확대 지원

- 태풍, 우박 등 각종 기상재해 등으로부터 경영체가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
 - 6대과종 보험 실시지역을 2004년도부터 전국으로 확대
 - 대상과종 : 사과, 배, 포도, 복숭아, 단감, 감귤
 - 대상재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, 장기적으로는 모든 재해(All-Risk)를 대상으로 실시
 - 가입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 : 운영비 지원율을 현행 80%에서 100%로 확대하고, 순보험료 지원율도 현행 50%에서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

□ 전국단위 과수생산자 조직에 대한 유통활성화 지원

- 전국단위 과수생산자조직이 중심이 되어 기술지도, 판촉, 공동브랜드 판매, 품질향상, 유통개선 추진 및 선진 유통 확립 적극 지원
 - 농기자재 공동구매, 시설의 공동이용, 판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융자 지원
- 사업비 : 500억원(국고융자 100%)
 - 기 지원액 : 500억원('02 : 200, '03 : 300)
 - 가공, 수출, 판매 등의 사업연합(원료구매·공동판매)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유통자재 공동구매사업비
 - 매년말 기준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융자금액, 기간 등을 조정함으로써 사업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유도

3. FTA기금 사업별 투융자계획(잠정)

□ 총투융자 계획(2004~2010)

(단위 : 억원)

사 업 명	사업량	단가 (백만원)	투융자 합계 (A+B+C)	보조			국고 융자 (C)	자담	FTA 기금 (A+C)
				국고 (A)	지방비 (B)	소계			
합 계			14,874 (17,133)	7,567	2,874	10,441	4,433	2,259	12,000
○ 고품질생산유통지원	31,380ha 284개소		9,232 (11,491)	3,800	2,874	6,674	2,558	2,259	6,358
- 생산시설현대화	28,860ha	-	6,100 (7,625)	1,906	1,906	3,812	2,288	1,525	4,194
· 우량품종갱신	6,000	5	240 (300)	75	75	150	90	60	165
· 키낮은사과원	6,000	30	1,440 (1,800)	450	450	900	540	360	990
· 배지주시설	3,000	10	240 (300)	75	75	150	90	60	165
· 포도비가림	3,300	30/150	1,079 (1,349)	337	337	674	405	270	742
· 복숭아등관수시설	8,700	7	487 (609)	152	152	304	183	122	335
· 감귤하우스	700	180	1,008 (1,260)	315	315	630	378	252	693
· 참다래방풍시설	400	45	144 (180)	45	45	90	54	36	99
· 시설재배현대화	760	109	662 (827)	207	207	414	248	165	455
· 기타 고품질생산			800 (1,000)	250	250	500	300	200	550
- 생산기반정비	2,500ha	25.41	646	519	127	646	-	-	519
- 농기계임대	60개소	500	150 (300)	150	-	150	-	150	150
- 거점산지유통센터	64개소	3,000	1,536 (1,920)	960	576	1,536	-	384	960
- 우량묘목생산	20개소	1,500	240 (300)	90	90	180	60	60	150
- 가공시설현대화	140개소	500	560 (700)	175	175	350	210	140	385
○ 과원규모화	3,000ha		1,875	-	-	-	1,875	-	1,875
- 매 매	1,500	105	1,575				1,575		1,575
- 임대차	1,500	20	300				300		300
○ 소득보전직불		-	2,262	2,262	-	2,262	-	-	2,262
○ 과원폐업지원	7,700ha	-	1,368	1,368	-	1,368	-	-	1,368
○ 조사·연구·홍보		-	88	88	-	88	-	-	88
○ 기금관리비		-	49	49	-	49	-	-	49

○ 총투융자액(A+B+C) 기준시 : 보조 10,441억원(70%), 융자 4,433(30%)

* ()는 자담 포함

□ 2004년도 투융자계획(잠정)

(단위 : 억원)

사 업 명	사업량	단가 (백만원)	투융자 합계 (A+B+C)	보 조			국고 융자 (C)	자담	FTA 기금 (A+C)
				국고 (A)	지방비 (B)	소계			
합 계			1,955 (2,264)	1,066	355	1,421	534	309	1,600
○ 고품질생산유통지원	3,182ha 60개소		1,154 (1,463)	505	355	860	294	309	799
- 생산시설현대화	2,682ha	-	678 (847)	212	212	424	254	169	466
· 우량품종갱신	500	5	20 (25)	6	6	12	8	5	14
· 키낮은사과원	600	30	144 (180)	45	45	90	54	36	99
· 배지주시설	400	10	32 (40)	10	10	20	12	8	22
· 포도비가림	440	30/150	144 (180)	45	45	90	54	36	99
· 복숭아등 관수시설	523	7	29 (36)	9	9	18	11	7	20
· 감귤하우스	50	180	73 (91)	23	23	46	27	18	50
· 참다래방풍시설	60	45	22 (27)	7	7	14	8	5	15
· 시설재배현대화	109	109	95 (119)	30	30	60	35	24	65
· 기타 고품질생산			119 (149)	37	37	74	45	30	82
- 생산기반정비	500ha	25.41	66	53	13	66	-	-	53
- 농기계임대	20개소	500	50 (100)	50	-	50	-	50	50
- 거점산지유통센터	10개소	3,000	240 (300)	150	90	240	-	60	150
- 우량묘목생산	10개소	1,500	40 (50)	15	15	30	10	10	25
- 가공시설현대화	20개소	500	80 (100)	25	25	50	30	20	55
○ 과원규모화	350ha		240	-	-	-	240	-	240
- 매 매	200	105	210				210		210
- 임대차	150	20	30				30		30
○ 소득보전직불		-	335	335	-	335	-	-	335
○ 과원폐업지원	1,480ha	-	204	204	-	204	-	-	204
○ 조사·연구·홍보		-	15	15	-	15	-	-	15
○ 기금관리비		-	7	7	-	7	-	-	7

○ 총투자액(A+B+C) 기준시 : 보조 1,421억원(73%), 융자 534(27%)

* ()는 자담 포함

Ⅲ. 향후 추진계획

□ 2004년도 지원사업계획 수립·시행(5월초 시행목표로 추진)

- 지방자율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실시
 - 시·도별 계획수립 및 예산 요구토록 조치
 - FTA지원사업심사위원회 구성 및 시·도별 계획심사
- 중앙추진사업의 추진여건 마련
 - 개방적응소득보전직불제 발동요건 모니터링 체제 구축
 - 폐업지원기준 고시 및 대상품목 재배농가 현황 파악
-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확정 및 사업시행
- 향후 투융자 집행·평가체계 구축시 FTA지원사업 추진방식 개선

□ 지원체계 구축

- FTA기금운용요령제정 및 국고취급체제 구축
- FTA이행지원위원회 구성
- TRQ 물량관리방안 고시 추진

□ 홍보추진

- 한·칠레 FTA 백서발간(KREI와 연구용역 추진)
- PCRM 및 시·도 순회설명회 등을 통한 지원대책설명 및 의견수렴
- 홍보물 제작·배포
 - FTA내용·영향 등 농업인의 불안심리 해소에 중점
 - 지원대책내용, 사업실시요령, 문답집 등 차질 없는 대책 추진을 위한 홍보

<붙임>

지자체의 과수사업 발전계획 작성 예시

사과산업육성계획

1. 사과산업 현황

☐ 현 황

- 농가수 : 전체, 규모별, 연령별
- 재배면적 : 전체, 품종별, 수령별(성과, 미성과)
- 재배시설 현황 : 키 낮은 사과원, Y자밀식 등, 관수시설 면적, 묘포장 보유 및 묘목생산실적 등
- 과실생산량 :
- 출하형태(계통출하, 개별출하, 수출 등)별 물량 및 금액
- 소득액
- 품목조직 현황 : 설립근거, 농가수, 재배면적, 생산량, 계통출하, 유통시설 보유 및 활용, 수지 등

☐ 재배여건

2. 육성 목표

☐ 고품질 생산목표

☐ 시설·기반정비

☐ 기술개발·보급

☐ 산지출하 개선

- 출하주체 광역화 등 육성대책
- 공동계산 등 공동출하 농가 확대 방안
- 브랜드 발전대책
- 산지유통시설 확충
- 전문 CEO 영입 또는 육성대책

☐ 수출대책

☐ 로드맵('04~'10)

3. 사업추진 계획

☐ 기본방향

☐ 세부추진 대책

- 사업주관, 사업시행 주체
- 지원대상조직 및 참여농가 선정기준, 방법
- 품목조직이 없는 경우 조직화 방안
- 주요추진사업
- 사업지원체계 운영계획
- 산·학·연·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 : 구성내역, 임무
- 지자체 지원계획
- 사업시행시 현장 지도·점검계획
- 평가계획
- 추진일정 등

4. 투자계획

☐ 총 투자계획

세부사업별	사업량	단가 (천원)	사업비(백만원)				
			계	국고	지방비	융자	자부담
계							

☐ 2004년도 예산 요구액

세부사업별	사업량	단가 (천원)	사업비(백만원)				
			계	국고	지방비	융자	자부담
계							

※ 단가 산출근거 : 붙임

☐ 지방비 확보계획

☐ 시설설치 사업은 부지확보 여부(미 확보시 확보계획)

5. 기대 효과

<참고자료>

<참고>

사업추진 체계

지원기준 제시

: 농림부, FTA이행지원위원회

- 주요지원대상사업 및 사업별 지원기준 제시



자율사업계획수립

: 시·군, 시·도

- 지역특성이 반영된 규모화된 생산·유통사업 연계
- 경쟁가능한 우수경영체에 집중지원
- 지역단위 또는 품목조직단위로 계획수립
- 시·도별 전문가 협의체가 계획수립과정 참여



사업계획자체심사

: 시·도

- 사업목표, 추진방향, 적정성, 사업추진능력, 실적 등 심사
- 지역(품목조직)단위로 사업계획 선정



사업계획심사·확정

: 농림부, 심사위원회

-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
- 사업목표, 추진방향, 적정성, 사업추진능력, 실적 등 심사
- 지역(품목조직)단위로 사업계획 확정



사업시행

: 시·군, 시·도, 사업대상조직

- 시·도별 전문가 협의체가 경영·기술지도, 현장애로 해결 등 컨설팅 실시



성과분석·평가

: 농림부, 민간전문기관

- 사업성과 분석(필요시 민간전문기관 용역실시)
- 평가결과에 따라 Feedback(지원방향개선, 지자체 예산 차등배분 등)